

정 관

1983년 3월 3일 제정
1984년 2월 25일 개정
1987년 2월 7일 개정
1989년 2월 24일 개정
1991년 2월 25일 개정
1995년 3월 29일 개정
1996년 5월 30일 개정
1999년 2월 26일 개정
2005년 2월 25일 개정
2008년 2월 27일 개정
2009년 2월 20일 개정
2010년 2월 19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스크린인쇄업과 이와 관련된 스크린인쇄기자재 제조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신기술의 보급 및 신 정보의 신속한 전달, 건전한 사업을 위한 지도육성, 스크린인쇄의 올바른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사무구역) 본회의 사무구역은 전국을 일원으로 하며 지방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제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써 정한다.

제6조(사업) 본회 제2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참고자료의 수집 및 배포
2. 회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기술지도와 연구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전 각호의 부대사업
4. 사업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한 도,소매 판매업 등 수익사업
5. 수익사업의 상품 및 판매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7조(분과 및 분과별업무) 본회는 4개 분과를 두며 분과별 업무를 분담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1. 총무, 재정분과위원회
 -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다. 협회원의 가입, 탈퇴와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2. 기술, 사업분과 위원회
 - 가. 기술세미나 및 각종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 나. 해외정보 및 해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다. 본회 사업에 수반한 일정에 관한 사항
 - 라. 회보 발행에 관한 사항
- 3. 인쇄분과위원회
 - 가. 업체간의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건전한 거래 유도
 - 나. 신기술 습득에 관한 사항
- 4. 기자재분과위원회
 - 가. 기자재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 나. 제품개선에 관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8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구성한다. 단 스크린인쇄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본회의 취지에 적극찬성하는 자는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스크린인쇄업을 영위하는 자.
2. 스크린인쇄 기자재 생산자.
3. 스크린인쇄에 필요한 기자재를 판매하는 자.
4. 기타 특수 인쇄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9조(회원의 가입) 본회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전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임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권리와 의무) 1. 본회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보유한다. 단, 명예회원은 다음 1호, 2호의 권리만 보유한다.

- ① 회의시의 의결권행사
- ② 본회 업무에 대한 의견의 진술
- ③ 본회의 운영에 대한 회장의 설명요구 및 관계서류의 열람청구

2. 본회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단, 명예회원은 다음 1호, 2호의 의무만 진다.

- ①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 ③ 가입금 및 회비의 납부

제11조(회원자격상실) 본회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임의로 탈퇴하였을 시

2. 파산 또는 금치산을 당하였을 시

3. 제명 또는 폐업하였을 시

제12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임의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 1. 본회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회장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제10조의 2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단, 본회는 두 차례 이상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충분한 통지를 한 후 징계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

③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2.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제명, 회원자격정지, 문책으로 한다. 단, 제명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정족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이하(개정 2008.02.27)

3. 이사 10명이상

4. 감사 2명

5. 상임이사 1명

6. 자문위원 약간명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 1항은 제14대 임원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9.02.26)

2.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퇴임한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등록회원 10%이상의 추천(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 총회 개최일 10일전까지 협회 사무국에 입후보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구비서류(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에 대한 복수추천은 무효로 간주한다.
(개정 2005.02.25)

2.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자문위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추천기로 한다.

4.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한다. 단, 회장의 보선은 임시총회에서 한다.

제17조(임기연장) 특별한 사유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임원을 선출 하기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원은 다음 총회가 완료될때 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8조(임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 임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보유한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 유보시에 이를 수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회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의 직무를 집행한다.
- ⑥ 감사

가. 감사는 협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 감사할 수 있다.

나. 재산상황,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사실이 발견될 시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⑦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2.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회비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 운영을 책임 질 의무를 진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본회 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전조 2항의 임원회비를 년3회 체납시는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으며 임원의 결격사유가 된다.
2. 상임이사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직원) 1.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유급직원 약간명을 채용할 수 있다.

2. 직원은 회장의 지시로 협회업무에 종사한다.

제21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서 명예직으로 한다. 단,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유보수로 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2조(회의) 본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2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또는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매 사업 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및 결산의 승인사항
4. 협회원의 제명
5. 협회의 해산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마감 후 60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6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② 회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전항 2호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회장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제27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의결한다.

1.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회장 7명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총회에 부득이 참석 못 할 회원은 대리인을 선임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회원이 대리인을 총회에 출석시킬 경우에는 대리권을 인정할 서면을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29조(총회의결의 제척사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1.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계되어 의장 또는 회원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30조(이사회)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에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시는 서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회장은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 운영전반에 대한 중요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총회의 위임사항과 협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징계의 심의
5.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32조(이사회의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원) 본회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가입금, 회비, 사업 수익 및 찬조금 기타의 잡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1. 가입금은 회원으로 가입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찬조금은 제18조 2항에 의한 임원이 납부하는 임원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
3. 회비는 회원이 매월말일까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업수익은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의 수익금이다.
5. 잡수입은 회보의 광고비 및 본회 행사시 회원 격려금이다.

제34조(세입세출) 본회의 세입은 전조의 재원으로 하여 세출에 충당하고 잉여금이 유할시는 그 잔액은 차월한다.

제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로 한다.

제36조(감사) 본회의 감사는 년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회장은 매 결산 말기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사업보고서

제37조(사업계획 등 보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해당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업무 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해산사유) 본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1.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산을 의결하였을 때
2. 협회가 파산하였을 때
3. 관서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제39조(청산) 1.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2. 청산인은 재산상황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귀속결의안에 의거 회원에 귀속시킨다.

제41조(정관개정) 본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

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개정한다.

제42조(서면결의) 총회, 이사회결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사항 또는 특수사정으로 회의소집이 곤란할 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정관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의 미비한 조항은 총회결의에 의하여 정한다.